

대한복싱협회 전담팀 공개채용 (블라인드 채용)

1 채용분야

분야	인원	주요업무
국가대표 트레이너 (전담팀)	1명	- 강화훈련 참가선수의 훈련일지, 치료일지 작성, 선수단 관리 - 훈련/대회 전, 후 선수단 테이핑, 마사지 등 선수단 관리 - 국가대표 트레이너 보수교육(훈련스킬, 의·과학화 훈련, 심리분석 등) 참가

2 근무형태 및 조건

분야	근무신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 보수(세전)*
국가대표 트레이너 (전담팀)	계약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국가대표 훈련장소	계약일로부터 2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국가대표 트레이너 (전담팀)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 및 대한복싱협회 정관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 제6조(국가대표 전담팀의 자격) (2026.02.02. 개정사항 반영) ② 트레이너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2제4호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분야별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로 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제0조의 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 공인외국어성적(TOEIC/OPIC&TOEIC Speaking/TOFLE(IBT)/TEPS/IELTS) 소지자 우대

4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전형별 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04. 14.(화) ~ 05. 15.(금) 12:00(정오) [서류 합격자발표: 05. 18.(월)] ※개별통보 예정
면접전형	면 접 일 : 05. 20.(수) (예정) 장 소 : 올림픽회관 내 회의실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05. 22.(금) 예정]
정식채용	2026. 06. (예정)

나. 전형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전형별 평가방법]										
채용분야	전형	• (선발인원) 채용 예정의 1배수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트레이너 (전담팀)	서류전형	<table><tr><th>구 분</th><th>주요내용</th><th>배점</th></tr><tr><td rowspan="2">자격요건 확인</td><td>○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인정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 경력충족여부(관련 경력 2년이상) 확인</td><td rowspan="2">30점</td></tr><tr><td>- 우대사항: 스포츠마사지 및 테이핑 관련 자격증소지/교육 수료자 공인외국어성적 소지자</td></tr></table>	구 분	주요내용	배점	자격요건 확인	○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인정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 경력충족여부(관련 경력 2년이상) 확인	30점	- 우대사항: 스포츠마사지 및 테이핑 관련 자격증소지/교육 수료자 공인외국어성적 소지자	
		구 분	주요내용	배점						
		자격요건 확인	○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인정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 경력충족여부(관련 경력 2년이상) 확인	30점						
	- 우대사항: 스포츠마사지 및 테이핑 관련 자격증소지/교육 수료자 공인외국어성적 소지자									
	자기소개서	○ 직무 역량 및 경험 평가 - 지원분야 관련 달성 업적 및 장점 기술(1,000자)	70점 '부적합시 평가제외'							
면접전형	• (일자/장소) 05월 20일 수요일 / 올림픽회관 내 회의실 * 정확한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정량평가(전문성/자격증), 운영계획, 업무 이해도, 인성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4개 항목 평가 (전문성30점, 운영계획30점, 종목이해도20점, 인성20점 총점 100점 만점)									
최종합격	• (최종확정) 자격 검증 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확정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	------	------	----

① 공통(유의사항)

- 지원서는 이메일 (koreaboxing@sports.or.kr)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후 확인메일 회신 예정
-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
-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트레이너(전담팀)			
원서접수 [26.04.14(화)~ 26.05.15(금)]	○ 입사지원서(대한복싱협회 양식)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대한복싱협회 전담팀 지원(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 인정자격증, 공인 어학성적, 경력증명서 등	○ 26.05.15.(금) 12:00(정오)까 지 메일 제출 (koreaboxing@sports.or.kr)	입사지원
면접당일 [26.05.20(수)]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	○ 원본제시	입사지원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 대한체육회 제출서류(추후 제공) ○ 공무원기준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서류접수 시작일(2026.04.14.)을 기준으로 기재

구분	주요업무
응시자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반환 방법	○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비용 개인부담)
채용서류 보관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채용서류 파기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후 진행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야하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복싱협회 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이에,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oreaboxing@sports.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복싱협회 홈페이지(boxing.sports.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대한복싱협회 국가대표 담당자

[koreaboxing@sports.or.kr]

2026.04.13.[월]

대한복싱협회

대한복싱협회 인사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제13조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0. 다른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